

시험과목(제9조제1항 관련)

구분	시험과목
1. 제1차 시험	가. 「민법」 중 총칙, 물권에 관한 규정 나. 경제학원론 다. 부동산학원론 라. 감정평가 관계 법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중 지적에 관한 규정, 「국유재산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부동산등기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) 마. 회계학 바. 영어
2. 제2차 시험	가.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) 나. 감정평가이론 다. 감정평가실무